

구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심의일자	2023. 7. 11. ~ 7. 17.
건축종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축주	현대○○○○		
대지현황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지번 : 372번지	관련지번 : 361-4 외 7필지	
	대지면적 : 3,845㎡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미포국국산업단지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3,074.45㎡	건폐율 : 79.96%	층수 지하 : 층 / 지상 : 1층
	주용도 : 공장	구조 : 일반철골구조	세대수(호)/동수 : 세대 / 1동
	최고높이 : 13m	용적률 : 79.96%	연면적 : 3,074.45㎡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종합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붕 구조부 설계시 개방형 건축물 풍하중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 적용 근거를 제출 바람 2. Rotary Pile 지지력 산정시 좌굴을 고려한 지지력 산정 결과를 제시 바람 3. FSI 하부 Pile 필요여부 확인 바람 4. 개폐지붕 레일 하부 ST3a 처짐 검토 바람 5. 부압 풍하중 작용시 개폐지붕 레일 고정부 검토 결과 제시 바람 6. Y2열 기초 Pile 공사시 기존 건물과 간섭 여부 확인 바람 7. Main Truss Splice 위치 방법 도면 표기 바람 8. Main Truss 사재 보강 Plate 구간 명시 바람 9. 적설하중은 완경사지붕에 대한 경우로 재검토하기 바람(P.3) 10. 풍하중 산정시 건물의 위치를 기본풍속 등고선에 표기하여 정확한 하중을 산정할 것(P.55) 11. 풍하중 산정시 지표면 조도구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하기 바람(P.55) 12. EIGENVALUE ANALYSIS에서 각방향 질량참여율은 90%이상 되도록 재검토할 것(P.63) 13. 지진하중에서 내진등급이 II가 맞다면 층간변위 제한은 0.02로 검토할 것(P.67) 14. 처짐검토시 제한값과 비교하여 제시하기 바람(P.75~102) 15. SHN 재질 H-BEAM에 연결되는 모든 PLATE는 S재질로 표기하여 설계할 것(P.303부터) 16. 1층 바닥이 SOG 슬래브로 설계하였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파일기초와 접합 상세를 제식하기 바람(P.6) 17. 설계지내력 Fe=150KN/M2 확보(주골조 파일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계산서, 구조도서 S-0101/S-3501 - 1층 화물 적재구간 및 1층 Crane 위치구간 - 지질조사서상 1층 바닥이 level에서 설계지내력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대안을 제시할 것 18. 철근콘크리트부재 설계 및 지붕풍하중 산정시 현행 구조기준으로 검토할 것(KDS 2022) 19. 캐노피가 가설시설로 분류되더라도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에 신축되는 캐노피의 규모와 존치 기간을 생각했을 때 내진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지반이 S5의 열악한 조건임을 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동적해석 결과가 구조계산서에 누락되었음 - 하중조합에서 지진하중이 제외되었음 	
심의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원안 의결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의결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의결 [<input type="checkbox"/>] 부결</p> <p>※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